

# 언론중재

Winter 2016



vol. 141

**Focus On Media** 투명사회와 프라이버시권의 미래

- 'Zero 프라이버시' 시대와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 SNS 공간의 패러독스와 프라이버시: SNS 공간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법적쟁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동영상 뉴스 콘텐츠의 혁신과 OTT 서비스

**사건 속 법률**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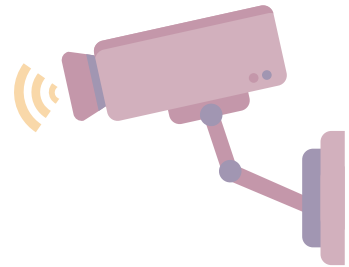
**토론회**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백대용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I. 들어가며

요즘 사람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얼굴과 신상정보, 친구관계, 가족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아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다양한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정보를 허락,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 심리학자가 아닌 필자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거리낌 없이 공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속내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척 관대하다. CCTV를 예로 들어 보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등산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모든 등산로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CCTV가 많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CCTV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범죄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주민의 비난이 쇄도하기도 한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이 CCTV를 통해 모니터링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면서 CCTV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과 사생활 또는 초상권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인식이 초래하는 괴리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생활 보호에 무게

중심을 둔다.<sup>1)</sup> 그런데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양자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다.

아래는 조만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모습 중 하나이다. 상상으로 만들어 낸 일상이기는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술의 활용과 사생활 보호의 긴장관계는 앞으로도 진행형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장면 1

하루하루가 매우 편리하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세안을 할 때마다 거울에 설치된 안면인식시스템이 나의 얼굴 스캔을 통해 건강 상태를 분석한 뒤 그날 컨디션에 따른 아침식사와 옷차림 등을 준비해 준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양 손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홍채나 안면인식기술이 적용된 카메라가 나의 신분을 확인해 주고 물건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해 주며 정산도 알아서 처리해 준다. 사거리마다 하나씩 떠 있는 드론은 교통경찰을 대신해 수많은 자동차와 보행자를 분석한 후 최적의 교통신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나의 일상은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내가 지닌 RFID(전자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길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sup>2)</sup>는 이를 분석하여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나의 나이, 성별, 인종, 개인적 취향 등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장면 2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과 같다. 사소한 실수로 작은 범죄를 하나 저지르게 된 뒤로 나의 삶은 감옥과 같이 변해 버렸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은 범죄 행위의 경우, 굳이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할 필요까지는 없게 되었지만 그 대신 사회적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다. 사람들의 향의로 CCTV나 드론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오지는 못

1) 이승환 (2015. 8. 6.). 머드축제 포스터에 내 얼굴 나왔다면 법 “초상권 보호절차 생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508061812027645>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충남 보령시와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보령머드축제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 A씨가 제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A씨는 2011년 열린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양손을 들고 환호하는 사진을 포스터 하단에 길게 배치했다. 사람들의 팔과 손이 주를 이룬 하단 사진에서 누군가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탄 듯한 B씨의 얼굴이 노출됐다. B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의 없이 썼다는 이유로 보령시와 조직위, 사진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당시 30대 여성으로서 머리와 얼굴에 진흙이 묻은 사진이 알려질 경우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A씨의 촬영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령시 등은 “포스터는 머드축제를 널리 알리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다 해도 B씨의 얼굴 사진을 넣어야 할 필요나 초상권 보호 절차를 생략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경우에게까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머드 축제가 불법적인 집회도 아니거니와 성공한 지역축제의 성격상 대중매체에 의한 촬영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으로 인해 당사자가 당혹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런 이유로 법원의 판단은 초상권을 너무 절대적인 권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떠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통신 매체를 의미한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홍채 인식으로 행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개별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옥외광고판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TV,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제4의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과 편리 증대라는 미명하에 공공장소에서는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나의 출근과 퇴근시점을 확인하고 나에게 배당된 드론이 나의 하루 일상을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 드론의 크기가 파리와 같아 그 존재가 일상생활에 방해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무언가에 의해 내 삶이 매일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유쾌하지 않다.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감시이다 보니 인정머리도 없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사법당국에 보고되지는 않을까 싶어 매우 위축된 삶을 살게 된다. 사회가 너무 각박해진 것 같다.

## 길 위의 감시자, 블랙박스와 CCTV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동영상은 사람들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방송이나 SNS를 통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뒤 승용차가 대형차와 충돌하면서 종잇장처럼 구겨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 뒤 운전공포증과 같은 일종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엔 사망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운전기사의 졸음 운전 탓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관광버스에 부딪히며 심하게 파손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선 꼭 필요하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으면 위의 경우처럼 그대로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연령에 관계 없이 끔찍한 사고 영상을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2016년 5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130만 대로 국민 2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블랙박스가 법적으로 CCTV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고 시 증거확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요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CCTV가 무려 2천만 대가 넘는다는 얘기가 된다.<sup>3)</sup> 그리고 이는 블랙박스에 교통사고 동영상 외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이 촬영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자동차 블랙박스를 제외하고도 약 800만 대로 추정된다.<sup>4)</sup>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일반 직장인이 하루 동안 민간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약 70회인 것으로 나타났고, 백화점에서 체류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3시간 동안 무려 45회 가량 CCTV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자동차 블랙박스를 제외한 CCTV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우리가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임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는 이전부터 있었다.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제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모 방송사의 경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사고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이 침해될 가능성, 충격적인 사고 장면의 노출로 인한 트라우마 야기 등과 같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민간 부문에 설치된 CCTV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14년 11월에는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 구단이 소속 선수들의 동선과 출입 시간, 동행자 등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원정경기 시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얻어 2014년 시즌 개막 직후인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의 출입 시간대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랙박스나 CCTV에 대한 수요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영국 런던시는 CCTV 카메라와 도로차단기로 구성된 ‘철의 포위망(Ring of Steel)’이라는 통합시스템을 도로에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범죄활동을 감시하고 추적하며 도시주위에 감시와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카메라는 도시 진·출입 추적뿐만 아니라 차량번호판 자동 인식기능도 보유

3) 행정자치부는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CCTV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5 정보화통계집》, 428면.

이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나라로 알려졌던 영국에는 500만대 안팎의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니 CCTV 수만 놓고 보면 세계 1위인 셈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이 통계에는 가정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나 차량용 블랙박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5) 정신교(2015), CCTV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찰업무 활용성 제고방안.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면.



하고 있다. ‘철의 포위망’은 2005년 런던지하철 폭탄사건 용의자의 신원 확인 시에도 활용됐다. 런던에는 ‘지능형 통행자 감시 시스템(Intelligent Pedestrian Surveillance System)’도 있어서 400만 대 이상의 카메라가 거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돼 자살시도, 의심 물체 및 행인감시, 도시범죄 예방 등에 활용되고 있다.<sup>6)</sup> 그 결과 런던에서는 살인사건 검거율이 1999년 75%에서 2005년에 95%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일선 현장에 보급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 및 범죄혐의자, 증인 및 범죄 제보자, 일반 공중을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녹화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법집행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5년 6월 “경찰청이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sup>7)</sup>

## 하늘 위의 감시자, 드론

어느 틈엔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도입된 드론<sup>8)</sup>은 그 장점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드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 이상 성장하여 10년 이내에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연방항공국은 올해 미국에서 250만 대의 드론이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에는 판매량이 7백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이다. 우리나라도 드론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드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며, 규제가 풀리면 드론의 가시권 밖 비행, 야간 비행, 고(高)고도 시험비행 등이 허용된다. 해외 각국 또한 드론 관련 규제 정비를 진행함에 따라 상업용 드론시장과 생태계의 확장 및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드론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블랙박스 또는 CCTV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블랙박스나 CCTV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드론이 사생활 침해하

6) 류연수(2016. 11. 18), 더 안전한 사회...스마트치안 현황과 과제. <정책브리핑>. URL: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24897>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2015. 6. 8.). 경찰청의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의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가능 여부 질의 건(의안번호 제2015-10-18).

8) 드론은 항공법 제2조 제28조에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를 지칭한다(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호).

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 드론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와이파이기가 켜져 있는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무작위로 빼내갈 수도 있어 개인정보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해커가 보안에 취약한 드론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다른 용도로 악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드론을 사생활 보호에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한다. 2015년 7월 미국 켄터키 주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드론을 총으로 격추시켰다. 이 남성은 두 딸과 함께 집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날아들자 새를 잡는 산탄총으로 드론을 격추시킨 것이다. 드론의 주인은 자신은 연방항공청(FAA)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고 단순히 이웃집의 사진을 찍으려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드론 값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의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켄터키 지방법원은 사유지에 드론이 날아다닌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므로 남성이 드론을 격추시킬 권리를 가진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 주택의 상당수가 아파트인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따라서 드론 자체가 갖는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드론 사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냉정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드론 자체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그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여 산업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 분야에서 경찰의 드론 활용 및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뉴멕시코, 와이오밍 주 등은 경찰이 영장 없이 드론을 통해 증거 수집 및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약 20여

개 주에서 이와 유사하게 경찰의 드론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드론 사용과 관련하여 민간분야에서 항상 언급되는 이슈 또한 프라이버시 문제다. 테네시 주는 타인 또는 타인의 사유지를 감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드론 촬영을 금지하였으며, 위스콘신 주는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는 곳에서의 드론을 이용한 촬영 또는 관찰을 일체 금지하였다. 오클라호마 주 상원





의원인 랄프 쇼터(Ralph Shortey)는 사유지를 침범한 드론을 총으로 쏘거나 부숴도 드론 손괴에 대해 어떠한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드론의 활용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드론을 띄워 지표면에서는 볼 수 없는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추적하여 사냥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 등에서는 드론을 사용한 야생동물 사냥을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규제의 범위를 이보다 확대해 드론이 비행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야생 동물 포획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중이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이 드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온라인 드론 등록제를 시행하여 드론을 구매하거나 운용하는 사람은 드론 최초 운용 전에 온라인을 통해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가져다주는 업무수행의 혁신과 편리함이 점점 부각되면서 드론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미 연방항공국은 드론의 야간 비행을 금지하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최근 들어 인터스트리얼 스카이웍스(Industrial Skyworks)사의 빌딩과 지붕 검사를 위한 야간 드론 비행을 처음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주간 비행과 비교해 더 까다로운 안전 수칙 및 조건을 적용하긴 하였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드론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드론에 대한 모든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드론의 사업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 모든 분야로 확대하였고 드론 사용사업의 자본금 요건도 폐지하였으며,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의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드론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상당한 취업 유발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드론산업이 가져다 줄 미래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작용이 내재되어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감시자들에 의한 사생활 혹은 초상권 침해

길 위의 감시자인 블랙박스과 CCTV, 하늘 위의 감시자인 드론 등은 사생활 혹은 초상권 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은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일체의 침해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브렌다이스와 워런(Louis Brandeis & Samuel Warren)은 1890년 하버드 법률저널에 발표한 ‘프라이버



시권(The Right to Privacy)’이라는 논문에서 쿨리(Cooley) 판사가 언급한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Alone)’를 인용하여 미국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버시를 정의하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의 논문은 프라이버시권의 ‘효시(Root Article)’로 평가된다.<sup>9)</sup>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권은 1980년 헌법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조항은 1987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제17조로 조문의 변호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왔다. 사생활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화되어 가면서 점차 사회적 인식도 확산되고 그에 따라 보호해야 할 범위 또한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일도 점점 많아졌다.

법원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sup>10)</sup> 그러나 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도가 모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공적 인물의 경우 알권리를 우선하여 사생활권의 인정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 공적인물의 프라이버시가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명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당사자의 입장에 선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로서 공공성도 없다고 한다면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 김우중 평전 사건<sup>11)</sup>

신청인은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9) 박원규(2015), 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 분석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9집, 35면.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11)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카합3438 판결.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신청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평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생활권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는데 아래 판결은 사생활 관련 보도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밝힌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은퇴한 여자탤런트 사건<sup>12)</sup>**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衡量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할 만한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본인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초상권이란 일반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사진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갖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권리로서 초상권의 개념은 법적으로 보장될 권리의 내용 그리고 범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권리로서 초상권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학자들의 해석, 법원의 판례에서 각기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초상권을 자기의 용모나 자태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함부로 촬영·제작·이용·공표되지 않을 인격적 이익 내지 권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넓게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자(容姿)를 묘사한 사진·회화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갖가지 신체적 특징이나 목소리 등도 포함된다고 보거나, 사람의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카합24129 판결.

얼굴·음성·성명·서명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람의 얼굴 이외에 음성·성명·서명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sup>13)</sup>

우리나라 법원은 사생활권의 일부로서 초상권을 인정해 오다가 점차 사생활권과 구별되는 초상권의 개념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초상권을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써,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시해 왔다.<sup>14)</sup>

법원은 초상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촬영 및 작성 거절권’, ‘공표 거절권’, ‘초상 영리권’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촬영 및 작성 거절권은 얼굴이나 사회 통념상 특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초상화와 같은 형태로 제작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다. 즉 공표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이나 그림 등의 형태로 제작되는 것 자체를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공표 거절권은 일단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제작된 그림 등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할 권리이다. 초상 영리권은 단순한 공표를 넘어 이를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대항하는 권리이다.<sup>15)</sup> 위 유형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촬영 및 작성 거절권(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과 공표거절권(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이다. 법원은 비록 촬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을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뉴스



13) 조소영(2015).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151-152면.

1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5) 심석태(2016). <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컬처북, 182-183면;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意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초상권 침해의 3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다.



기사에 피해자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피해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sup>16)</sup>

결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상권은 사생활권의 일부에서 시작하여 점차 독자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매우 강화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등을 통한 명시적 동의를 받은 뒤 그 동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단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서면 동의 등을 받는 것을 생략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꼭 해당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즉 일단 명시적 동의가 없는 모든 촬영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원이 초상을 ‘꼭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초상권을 보호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했던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sup>17)</sup> 이렇듯 초상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로 말미암아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마저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블랙박스, CCTV, 드론 등과 같은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판단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게 한다.

## 영상기기로 인한 초상권침해 판단기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초상권과 관련하여 법원은 언론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언론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법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형량 과정에서 이러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가운데 ‘굳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신원을 가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다보니 카메라 앞에서 취재에 협조를 했던 사안에서조차 ‘서면 동의를 생략할 정도의 시급성’이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8)</sup> 이렇게 초상권을 엄격한 권리로 볼 경우,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상기기를 이용한 촬영이 과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생활권 혹은 초상권의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나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는 사생활 공개

16)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17) 심석태(2014).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에서 분리되었나.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272-273면.

18) 앞의 심석태(2014). 275-277면.

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다면 사생활권 또는 초상권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촬영도 사생활, 특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사생활권 혹은 초상권 침해의 긴장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접근과 묘수가 필요한 때이다. 